

U N	목 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 부 목 표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지 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I. 글로벌 지표 정의

<2유형>

지표명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정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 진전을 의미함

II. 데이터 설명

[데이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산식	각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곱하여 0과 1사이의 지표 값을 산출 보고시점마다 국가의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점수가 제공되지만, 해당 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점수는 5점 척도로 변환되어 제공됨		
	변수	국제 협약	가중치
	변수 1(V1)	1982 유엔해양법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준수 및 이행	10%
	변수 2(V2)	1995 유엔어종자원협약(1995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의 준수 및 이행	10%
	변수 3(V3)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POA-IUU)의 일환으로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NPOA)을 개발 및 이행	30%
	변수 4(V4)	2009 항만국 측정에 대한 FAO협약(2009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PSMA)의 준수 및 이행	30%
	변수 5(V5)	1993 FAO이행협정(1993 FAO Compliance Agreement)과 FAO기국상태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FAO Voluntary Guidelines for Flag State Performance)에 따른 기국 책임(Flag State Responsibilities)의 도입	20%
측정단위	이행정도(1:가장 낮음, 5:가장 높음)		
자료수집방법	각 국제적 수단의 이행 정도에 대한 설문지를 FAO를 통해 발송하여 국가 별 응답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		
공표주기	2020년에 자료 수집 예정		
지표소관기구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글로벌 지표 링크	■ 메타데이터: <a href="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4-06-01.pdf">https://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4-06-01.pdf</a> ■ 데이터: <a href="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a>		